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혁신창업리그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처 통합 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의 예선리그인 혁신창업리그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올해의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와 「시리그」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함.
중복 신청/접수가 확인될 경우, 대회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1 대회 개요

□ (사업목적)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창업경진대회 예선리그인 혁신창업리그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및 포상하여 창업 분위기 확산

* (주최) 중소기업부, (주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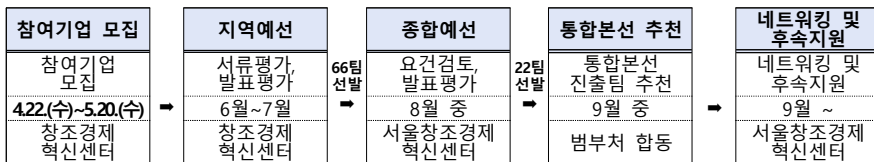
□ (지원대상)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지원내용) ①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우수기업 상금·상장, ②「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본선 진출 기회 제공, ③종합예선 및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본선 진출기업 대상 후속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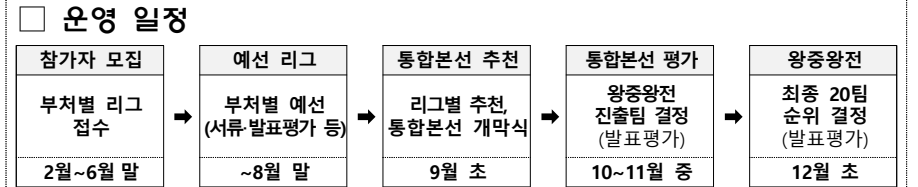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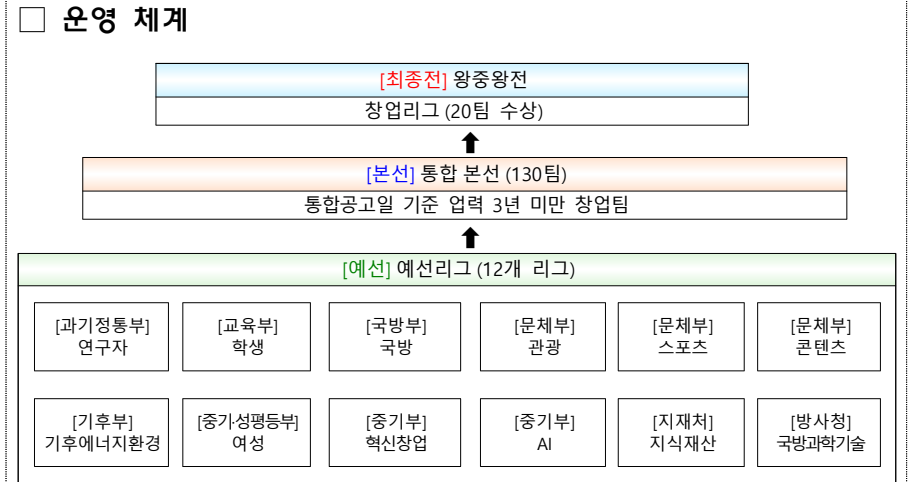
□ (운영일정) 지역예선에서 전국 종합예선을 통해 우수기업(5팀) 및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본선 진출기업(22팀) 선발

< 혁신창업리그 운영 일정 >



* 상기 절차 및 일정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운영 체계 >



* 대회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왕중왕전 시상규모

구분	창업리그 훈격	상금
TOP 1(대상)	대통령	5억원
TOP 2(최우수상)	국무총리	1억원
TOP 6(우수상)	과기정통부장관	각 5천만원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문체부장관	
TOP 10(장려상)	기후부장관	각 1천만원
	성평등부장관	
	지재처장	
	방사청장	
TOP 20(특별상)	중기부장관	각 5백만원

* 상금 규모는 세금 포함

** 수상팀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해당(후속 연계 지원 '수상팀' 반영)

※ 상격, 훈격 및 상금 규모 등은 대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혁신창업리그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대회(혁신창업리그) 참가 신청 시 (필수)	① 참가신청서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대체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첨2' 양식 활용
②참가자격 증빙서류 (평가 통과 시) (필수)	① 대표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6.3.31.) 이후 발급분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PMS 자동연계)
	③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인대업' 보유자 한정
	④ 4대보험 가입자명부	팀원증명용 (제출 시점 1개월 이내 발급분) (PMS 자동연계)
	⑤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별도 안내 예정 (PMS 자동연계)
	⑥ 누적 투자유치금액 확인 가능 서류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증명서 및 입금내역 등) ※ 대외 보안 등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불러치러 가능하며, 창업기업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30억원 이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투자유치 이력 없는 경우, 미제출
	⑦ 누적 상금 관련 확인 가능 서류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수상한 상장 및 관련 확인서 등 (누적 상금 3천만원 미만 참여 가능)	수상이력이 없는 경우, 미제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 대회 중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팀원에서 변동 시 별도 양식의 팀원확인서 제출

< 실적·기타 증빙 예시 >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

< (참고) 창업사업화통합관리시스템(PMS) 자동 연계 서류 >

구분	자동 연계 서류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납입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⑯이노비즈확인서	⑰중소기업확인서
	⑱디자인등록원부	⑳상표등록원부	㉑실용신안등록원부	㉒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납입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창업사업화통합관리시스템(PMS)를 통해 접수하므로, 표 안의 자동연계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 다만 원활한 자격 검증을 위해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필수 요청하며, '미동의' 시에는 해당서류를 반드시 직접 제출 필요

4

평가 방식

평가방법

- (지역예선)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종합예선 추천(66개)
- (종합예선) 요건검토 및 발표평가 → 수상팀(5개) 선정 및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본선 추천(22개)

* 평가단계별 고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 중도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정

< 혁신창업리그 평가방법 >

구분	지역예선	종합예선
평가대상	지역별 혁신창업리그 신청기업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예선 통과기업(66개)
평가방식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자격요건 검토
평가일정	6 ~ 7월	8월 중
운영기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센터별 종합예선 진출 T/O 상이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SST방식)

* 발표평가는 대면평가 원칙(대표자 발표, 질의 응답 시 팀원 배석하여 답변 가능)

< 혁신창업리그 평가지표(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P)(20점)	창업아이템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목표시장 분석 등
해결방안(S)(30점)	창업아이템 현황(준비), 실현(구체화) 방안, ESG 가치 실현 정도 등
성장전략(S)(40점)	사업화 추진 성과, 전략, 추진일정 및 자금 조달 계획 등
팀 구성(T)(10점)	대표자(팀) 역량, 외부 협력 계획 등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상

- 종합예선 평가결과 상위 5개 기업에 대한 시상 및 상금 지급

< 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시상규모 >

구분	훈격	수량	상금
최우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1점	1천만원
우수상	창업진흥원장상	1점	4백만원
장려상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상	3점	2백만원
합계		5점	2천만원

* '16~'25년 「올해의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은 통합본선 진출은 가능하나 종합예선 시상에서 제외

□ 주요프로그램

-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본선 및 왕중왕전 진출기업 대상 기술검증 투자 연계, 수상 전략 고도화 등 단계별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각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별 지원사업 연계 지원
 - ※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별 운영 계획에 따라 일정 및 방식 등은 상이함
(공고문 내 '8.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별 연계 지원내용' 참고)
 - ※ 운영주체: (종합예선 진출기업) 각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합본선 진출기업)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① 통합본선 진출기업 대상 주요 프로그램

- (Scale-Up 프로그램 운영)
 - IR 피치덱 고도화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 시장성, 투자포인트 등을 구조화 하고 참가기업의 발표 완성도 및 전달력을 극대화
 - 발표 스킬, 스토리라인 구성 및 질의응답 등 실전 중심의 코칭 제공
 - AC/VC 등 투자 전문가와 1:1 멘토링/컨설팅 제공
 - 유망 창업기업 대상 참가기업의 아이템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 'Scale-Up 프로그램' 의 경우, 주관기관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오픈이노베이션 및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 기술 및 수요분야에 적합한 창업기업 및 대·중견기업 간 밋업 진행
- 협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대상 후속 미팅 및 사업화 연계 지원

○ (올해의 K-스타트업 어워즈&네트워킹)

- 종합예선 상위 5개사 대상 우수 창업기업 시상
- 혁신창업리그를 통해 수상한 선배 창업기업을 초청하여 성공 사례 중심의 인사이트 제공
- 참가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경험 공유 및 질의응답 기회 제공

②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프로그램

○ (지역 기반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 지역센터별 전문 분야를 반영한 1:1 전문가 멘토링 제공
- IR 피칭 컨설팅, 발표 코칭 등 프로그램 지원
- 포럼, 네트워킹,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 기반 성장 프로그램 연계

○ (기타 후속 연계 프로그램)

- 지역 창경센터에서 운영하는 IR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및 투자 관련 사업 추천
 - ※ IR 컨설팅, 창업버스 IR 추천, 투자 검토 연계 등
- 우수 기업 대상 보육공간 입주 추천 및 가점 부여
- 창업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멘토링·교육 지원, 지역 창경센터 자체 운영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추천 트랙 참여 기회 제공 등
 - ※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프로그램' 의 경우, 기관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예선리그 단계별 모든 제출 서류는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동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저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다수 부처리그에 중복신청은 금지하며, 중복신청 시 통합본선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음
 -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다른 아이템으로 중복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통합본선 진출 시 1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 또는 참여(후원 제외)하는 **他 창업경진대회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중복수상 불가**
- 기(既) 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신청 접수 및 요건검토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양식 상이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수상기업은 향후 10년간 대회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회 사후 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왕중왕전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유료)할 수 있음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 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 가능하며, **대회 참가기업**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 제공 예정
 - * 원본증명서비스 조기소진 시 지원종료 될 수 있음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본선 진출기업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행기술조사) 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왕중왕전 진출기업(20개)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왕중왕전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7

문의처

접수 시스템 문의

- 국번 없이 1357

지역예선 문의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참조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리그 담당자 연락처 >

번호	지역예선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60	jiyoon.yang@ccei.kr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68	ryan923@ccei.kr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69	nohjh@ccei.kr
4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28	1231@ccei.kr
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36	god11@ccei.kr
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359-3619	sykim0905@ccei.kr
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31	jiae@ccei.kr
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22	mkyags@ccei.kr
		051-749-8970	jang12@ccei.kr
9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7262	seoul-startup@ccei.kr
		02-739-9157	
10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1085	kjw0620@ccei.kr
11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230-3411	pjw0424@ccei.kr
12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23	sooj05@ccei.kr
		032-458-5035	eunok@ccei.kr
1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1	jesung88@ccei.kr
1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22	khr06004@ccei.kr
15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31	aaahi@ccei.kr
16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89-7146	wrbae@ccei.kr
1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hoony@ccei.kr

* 지역예선 평가일정 및 평가결과 등은 센터별 운영 계획에 따라 상이

종합예선 문의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7262, 02-739-9157 / seoul-startup@ccei.kr

□ 연계 내용

- 참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예선 평가를 진행할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후속 연계 내용 상이 (※선택한 센터 외 연계 지원 신청 불가)

예선기관	연계 대상	연계 지원내용
강원	• 강원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추천 • 전문가 멘토링 지원 • IR 피칭 멘토링 지원
경기	• 경기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스타트업 815 IR(투자) 추천 및 우수 창업기업 직접 투자 검토 • In-Depth 네트워킹 통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제공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상시)
경남	• 경남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전문가 멘토링 지원 • IR 역량강화 교육 지원(CORN 3단계)
경북	• 경북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G-Star Pitchday(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우선권 • 전문가 멘토링 지원
광주	• 광주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발표평가자 대상 전문가 1:1 멘토링 지원(원스톱지원센터 연계) • 센터 투자IR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피칭 지원 • 실전창업트랙 창업교육 연계
대구	• 대구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종합예선 진출팀 대상 단계별 1:1 맞춤 IR 컨설팅 지원 •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 후속 컨설팅 지원
대전	• 대전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대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포럼, IR, 네트워킹 등 연계 지원 • 창업 BuS 연계 및 직접투자 검토
부산	• 부산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B.Cube 입주기업 지원 시 가점 3점 부여 • 부산센터 창업BuS IR 추천
서울	• 서울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IR 피칭 컨설팅 및 투자사 멘토링 지원 •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밋업 연계 • S밸리지 입주 가점 및 추천 입주 트랙 연계
세종	• 세종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포럼, IR, 네트워킹 등 연계 지원
울산	• 울산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매칭데이 기업 추천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심사 추천 • 종합예선 진출자 대상 전문가 멘토링
인천	• 인천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종합예선 진출자 대상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추천
전남	• 전남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종합예선 진출자 대상 전문가 멘토링 • 전남센터 입주기업 가점 및 추천
전북	• 전북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스타트업 포레 입주 지원 가산점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주	• 충남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BuS 추천 • 공용 업무공간(모바일오피스) 지원
충남	• 충남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종합예선 진출팀 대상 단계별 1:1 맞춤 IR 컨설팅 지원 •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 후속 컨설팅 지원
충북	• 충북지역 종합예선 진출팀	• 스타티움365 추천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되지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되지 적용 여부 확인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되지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되지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국가데이터처, kssc.mods.go.kr) 참고

통과한 자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중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1.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